

제 911 호

1982. 5.2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편집 : 공보관 이 층 우

전화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25-6090

시보

차례

○ 조례

제 1633 호 : 서울특별시 군장성급 소유자등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중 개정조례	3
제 1634 호 : 서울특별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 조례 중 개정조례	4

○ 규칙

제 1977 호 :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운영규칙	4
------------------------------	---

○ 고시

제 204 호 :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	26
제 205 호 :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	26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206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변경	27
제 207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인가	27

◎ 공 고

제 220 호 :	특정열 사용기자재 시공업체 지정취소	28
제 221 호 :	K.S 표시 정지처분해제공고	28
제 222 호 :	구산동가 압장시설 공사 실시계획공람공고	29
제 224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완료공고	29
제 226 호 :	도시계획사업 (백화점) 변경시행공람공고	30
제 227 호 :	건설업 (단종) 면허 영업정지공고	30

◎ 사 령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군장성급 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인)

◎ 서울특별시조례 제 1633 호

서울특별시 군장성급 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대한 특별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군장성급 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국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군용에 푸는 군장성급(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사법 제3조 규정의 군장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유자동차와 국방과학 연구용에 푸는 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 연구소에 근무하는 책임연구원, 책임기술원 및 호봉 7호 이상의 연구

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군장성급 및 연구원과 국방정책자문위원회" 군용 또는 국방과학연구용과 국방정책자문 위원용에 푸하기 위하여"를 "군장성급 및 연구원이 군용 및 국방과학 연구용에 푸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 5조 제1항중 "제조연호"를 "제조연도"로 하고 "군용 및 국방과학연구용과 국방정책자문위원회에 푸하기 위하여" 군용 및 국방과학 연구용에 푸하기 위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인)

38-4 제 911 호

시

보

1982.5.25

○ 서울특별시조례 제 1634 호

서울특별시 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시세과 세 면제 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시세과 세 면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 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보험 조합 및 등 연합회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조(면제대상) 제 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대상은 의료보험 조합 및 동연합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하였거나 과세면제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운영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인]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977 호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운영 규칙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재정한다.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운영규칙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및 부설임대아파트(이하 "회관"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운영원칙) ①회관은 근로청소년의 선도 및 자질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회관운영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영등포구에 위치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울특별시 전지역에 확대실시 할 수 있다.

<p>제 3 조 (사업계획서 작성 등) ①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회관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당연직위원 영등포구청 시민국장, 영등포 경찰서 정보 1과장,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영등포구 새마을부녀회장, 영등포구 사회정화위원장, 영등포구 새마을 협의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남서울갑지회장, 영등포구 직장 새마을협의회장,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 역동보구 지부장.</p>
<p>1. 정신교육사업 2. 정서함양사업 3. 상담사업 4. 복지후생사업 5. 인보험동사업 6. 주거환경개선사업</p>	<p>2. 위촉직위원 영등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대표, 청소년 선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자, 종교계 인사등</p>
<p>7.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p> <p>제 4 조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① 관장은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시 20인이상 50인 이내로 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허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④ 회관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필요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제 1 호에 해당하는 자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장이 추천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다.</p>	<p>1. 사업계획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근로청소년선도대체에 관한 사항 3. 노, 사립초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추진에 따른 계반협조에 관한 사항 5. 근로청소년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p>

<p>제 2 장 회관 운영</p> <p>제 5 조 (정신교육사업) ① 근로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케하고 건전한 생활관을 정립시키기 위하여 정신 교육을 실시한다.</p> <p>② 교육 대상자는 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 청소년으로 하며 교육방법은 학습훈련 형태로 남, 여를 구분하여 편성 실시한다.</p> <p>③ 교육 대상자는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장과 협의하여 선정되어 확정된 인원을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사업장 대표에게 통보한다.</p> <p>④ 교육 후 평가는 물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후 평가회, 성공 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p> <p>제 6 조 (정서합양사업) ① 근로청소년들에게 여가선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양 교육 및 취미교육을 실시한다.</p> <p>② 교육과정은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과정을 설치하되, 일반 근로자 및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정을 설치 실시할 수 있다.</p> <p>③ 교육과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다.</p>	<p>1. 교양 교육 과목 각종 계획 및 성교육, 생활법률 직장생활, 공공생활, 가정생활에 관한 사항 등</p> <p>2. 취미 교육 과목 수필물, 요리, 꽃꽂이, 음악, 서예, 바둑, 래크레이션 지도등</p> <p>④ 교육 대상자선정은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자 중에서 선정한다.</p> <p>⑤ 교육후 효과를 지속시키고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을 올바로 지도하기 위하여 작품 전시회 및 취미경진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 7 조 (상담사업) ① 근로청소년들의 제반 고충을 접수하고 직장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p> <p>② 상담대상자는 근로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일반 근로자 및 일반 청소년이 상담 요구시에는 예외로 한다.</p> <p>③ 상담은 면담, 순방, 전화, 서신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p>
--	--

<p>④ 상담사항은 이성, 결혼, 신상, 건강, 노사관계, 법률, 취업문제 등 근로청소년들의 모든 문제를 포함한 내용으로 하되, 개인에게 불이익하거나 유해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p>	<p>매화유지 등으로 한다.</p>
<p>⑤ 전문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자를 초빙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p>	<p>제 3 장 임대아파트운영</p>
<p>⑥ 상담결과 관계기관과 협의할 사항은 협조 의뢰하여 가능한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제 10 조 (주거환경개선사업) ① 근로청소년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부설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를 운영한다.</p>
<p>제 8 조 (복지후생사업) 매점 및 이·미용시설등을 설치하여 실비로 판매 운영함으로 근로청소년들에게 실질소득을 향상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체력증진과 전전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서실, 체육시설, 휴게실, 음악감상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 임대아파트의 최대 입주인원은 1,000명으로 하고, 1호당 입주인원은 5인으로 한다.</p>
<p>제 9 조 (인보협동사업) ① 회관내 각종 시설을 활용하여 인보협동의 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p>	<p>제 11 조 (임주대상자) 임대아파트 임주대상자는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생산적 미혼여성근로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p>
<p>② 인보협동사업의 주요내용은 근로청소년들의 전전한 자생조직 형성 유도 및 활동지도, 뮤로예식장 운영, 문학 및 예술작품 전시장운영, 문화영화상영, 기업주(임원포함) 및 지역사회 대표와 근로청소년들의</p>	<p>제 12 조 (임주신청) 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회당하는 자는 각 사업장 대표의 추천을 받아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임대아파트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신청서 1부 (별지 제 3호 서식) 2. 소속사업장 대표의 추천서 1부 (별지 제 4호서식) 3. 주민등록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1부 	<p>제 13 조 (임주자선정) ① 관장은 입주자선정시 각 사업장에 교류 수</p>

98-8 제911호 시

보 1982.5.25

해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의 규모, 기숙사시설 확보유무 및 입주신청가의 생활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신청자중 원호대상자 또는 모범근로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우선 입주 시킬 수 있다.

③ 관장은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동호수를 결정하여 이를 개시 공고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임대계약 및 입주) ①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결정 통지서를 받은 자는 지정기일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임대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남부 영수증사본 1부(별지 제7호서식)와 소속사업장 대표의 보증각서 1부(별지 제8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회관에 비치할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입주자 관리카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 이외의 타인을 동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단, 제16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계약해지가 된 자중 입주 대상자가 다시 된자는 제외
4. 기타 입주시킴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16조(계약해지)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한 때에는 소속사업장 대표에게 통보한다.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관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동숙시킨 자
3. 시설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거나 중기를 문란하게 한자

<p>1.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자</p> <p>5. 제 11조에 의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제외된 자</p> <p>6. 타사업장에 전직한 자(다만, 전직된 사업장에서 제주천을 받은 자는 제외)</p> <p>7. 임대료등을 2월이상 체납한자</p> <p>8. 관장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p> <p>9. 기타 임대아파트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p> <p>②관장이 임대계약해지 통고를 할 때에는 이사실까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p> <p>제 17조(사용료등 징수) 임대아파트 사용료는 임대료, 임대보증금, 기타 공공요금으로 구분 징수한다.</p> <p>제 18조(임대보증금) ①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료의 2월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p> <p>②임대보증금은 별지 제 7호서식에 의하여 임대계약서 선납하여야 하며 예치기준은 시장이 별도 정한 금융기관으로 한다.</p>	<p>③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가 계약 체결후 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른 임대료 기타 공공요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대체 납부할 수 있다.</p> <p>④제 3항에 의하여 대체납부 하였을 때에는 대체납부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재예치하여야 한다.</p> <p>⑤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가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제 16조 제 1항제 1호, 제 4호 및 제 7호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는 변상금 또는 체납액을 공제한후 환불한다.</p> <p>제 19조(임대료) ①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발부하는 별지 제 1호서식의 날입고서서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임대료를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권리 2할 5푼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p> <p>③입주자별로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출하되 원이하는 청상한다.</p>
---	--

<p>1. 1호에 5명이 1월을 거주하였을 시는 호당원 임대료를 호당월 입주자수로 계한 요금</p> <p>2. 1호에 1월미만 입주자발생시 1월미만 거주자는 거주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잔여거주자는 제1호의 임대료를 적용한 요금</p> <p>④임대료 납입고지서는 개인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p> <p>제 20조 (공공요금등) ①공공요금등은 관제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납부하되 그 사용자가 균등 부담하여야 한다.</p> <p>② 1월미만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전월(남기) 사용료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p> <p>③입주자가 없는 호에 대한 공공요금은 관장이 부담한다.</p> <p>제 21조 (임대기간) ①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간만료후 계속 임대하고자 할때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p> <p>②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임대계약서를 제작성하여야 한다.</p> <p>③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이사일로부터 30일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4장 보 칙</p> <p>제 22조 (직업안전소 설치운영) ①회관에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 직업안정소(이하 "직업안정소라 한다)를 병설 운영하며 상당 실장이 담당한다.</p> <p>②직업안정소의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전역으로 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후생시설 설치조례시행규칙 제9조를 적용한다.</p> <p>제 23조 (통보등) ①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사업장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제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사업장에 출장하여 협의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②각 사업장의 대표는 제16조의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계약해지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관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②(사업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전에 작성한 '82사업계획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사업계획으로 본다.</p> <p>③(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이전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입주한 것으로 본다.</p>
---	---

제 911 호 시

보 1982.5.26 00-11

(제 1호서식)

정신교육인원 확정통보서

수신:

발신: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장

제 목: 연도 정신교육인원 확정통보

년 월 일

구 분	남자 근로자		여자 근로자	
	19세 미만	19 - 24세	19세 미만	19 - 24세
기업전체총대상인원				
귀사대상인원				
귀사확정인원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제 4 기				
제 25 기				
제 26 기				
제 27 기				

*주: 1) 교육이 확정된 인원은 교육개시 3일전까지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

2) 등록시간: 13:00 ~ 17:00

38-12 제 911 호 시

보 1982.5.25

(제 2 호서식)

(교양, 취미) 교육수강신청서

본인은 귀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양, 취미) 교육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접수번호					198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한글)	성별	생년월일	19	(만 세)			
	(한자)	남여	주민등록번호					
본적								
현주소								
출생지								
최종학력	학교 년 (졸업, 재학, 중퇴)							
경력	기간	직장명	기간	직장명				
가족사항	관계	성명	년령	현주소	관계	성명	년령	현주소
희망과목	교양과목			취미교육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장 귀하

수강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성명	희망과목	
		교양교육 ()	취미교육 ()

제 91 호 시

보 1982.5.25 38-13

(별지 제 3호 서식)

임 주 신 청 서

1. 주택명 :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부설임대아파트

2.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 치	주민등록증		
현거주지			
거주상태	자가, 친숙, 세방(전세, 월세), 하숙	동 숙 여 부	가족, 동료, 친척, 기타
근무처	회사명		
가족관계	부모(생존시만 표시) 남 여 중 여	본인 월봉급액	원

3. 약정사항

- 가. 임대보증금은 입주계약 체결시까지 완납하겠음.
 나. 입주결정통지서를 받은후 지정기일내에 보증금을 납부치 않고 계약
 을 체결하지 못하시는 그 권리율 포기하겠음.

4. 첨부서류

- 가. 추천서 1부
 나. 주민등록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다. 원호대상자 또는 도법근로자증명 1부 (해당자에 관함)

위와 같이 임주신청합니다.

신청인

⑤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장

38-14 제 911 호 시

보 1982.5.25

(제 4호서식)

입 주 회 망 자 추 천 서

입주회망자 일자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순위
본적		
주민등록지		
현거 주지		
근무 부서	직명	
기타 사항		

위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부설임대아파트에 입주회망자로 추천합니다.

198 년 월 일

추천인 기업체명

직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장

제 911 호 시

보 1982.5.25 38-15

(제 5호 서식)

○ 입주결정통지서

입주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회사	근무부서	
입주동호수	동	호	방
계약체결일	198	년 월 일	월 일

상기와 같이 입주자가 결정되었기 통보하오니 지정기일내에 계약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기일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준비사항)

1. 임대보증금 납부증명사본 1부
2. 입주자 보증 각서 (기업체외 장 작성)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장

회사 귀하

38-16 제 911 호 시

보 1982.5.25

(제 6호 서식)	서울특별시장을 “갑” (이하 “갑”이라한다) 임차자 을(를) “을” (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u>임 대 계 약 서</u>			
(제 6호 표시)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 가 2 번지 4 호	제 1 조 (임대료 및 기간 등) ① “갑”은 위 표시 주택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아래 표시된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차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전 블 :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 판부설 임대 아파트 동 호 전평 12 평 (주택 내부시설물 일체)			
위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자			
임 대 보 증 금	임 대료 및 관리 비	임 대 차 기 간	납 부 장 소
원 원 정한 요금	“갑”이 산출하여 정한 요금	자 19 자 19	“갑”이 지정하 는 장소
② “을”은 매월 말까지 당월분 임 대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 다. 난, 지정기일까지 납부치 아니 할 때에는 “갑”이 정하는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납부하여야 하며 연 체료율은 년리 25%로 한다.	한다.		
③ “을”은 공공부분의 수도료, 전 기료, 오물수거 수수료 및 분뇨수 거 수수료 등을 공동 부담하여야	제 2 조 (임대료 등 변경) “갑”은 물 가 기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 대 보증금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 고 조정 시에는 “갑”은 이를 고 지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3 조 (임대료 등 계산방법) ① 임대료 는 임대차 개시일 (임대차 개시일		

<p>은 "임주 지정일"로 한다)로부터 계산하여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2. 임주증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p>
<p>1. 한호 5명이 정상적으로 1개월을 거주할 시에는 해당 월임대료를 해당 임주자수로 계한다.</p> <p>2. 한호 5명이 거주하다가 도중에 이주할 시에는 1월 미만 거주자는 거주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잔여 거주자는 제 1호의 임대료를 적용한다.</p>	<p>3. 임차권을 체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p> <p>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할 수 없다.</p>
<p>② 전기, 수도등 공공요금은 관제 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납부하되 그 사용자가 균등 부담하여야 한다.</p> <p>③ 월 미만 거주자는 해당 전월(남기) 사용료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5. 관장의 승인없이 타인을 동숙 시킬 수 없다.</p> <p>6. 시설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할 수 없다.</p> <p>7. 기타 공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하며 관장의 지시사항을 순수하여야 한다.</p>
<p>제 4조 (임주자 준수사항) ① "율"은 아파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관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해손하지 못한다.</p>	<p>② 제 1항제 1호 및 제 4호에 의하여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율"은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율'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p> <p>③ 천재지변, 화재, 도난, 연단 가스의 사고등 "율"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율"의 손해에 대하여는 "감"은 일체 그에 대한 책임을</p>

보 1982.5.25

지지 아니한다.

제 5 조 (해약조건) ① “율”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행의 최고등 다른 절차를 취할 이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제 4 조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입주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3. 임대료 및 체납부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자

4. 기타 지시명령을 위반 또는 불용 한 자

② 제 1 항에 의하여 해약되었을 때에는 “율”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되거하여야 한다.

제 6 조 (해약통보) “갑” “율”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30 일이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보증금의 반환) “율”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 보증금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약되었을 시 명도와 함께 반환한다. 다만, “율”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율”이 “갑”에게 부담하여야 할 제반 경비가 발생하였 시에는 우선 공제하고 잔액에 한하여 반환한다.

제 8 조 (원상회복) “율”이 되거할 시 사용하면 시설물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입주시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제 9 조 (연고권동) “율”은 위 표시 계약 기간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동 어떠한 권리의 주장도 할 수 없으며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 10 조 (소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고 “갑”은 최고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1 조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계약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2 조 (입주 예정일) ① 입주 예정일은 19로 한다.

② 하등 사유없이 위 기일내에 “율”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 “율”이 각 1통씩 보관한다.

19년 월 일

“갑” 서울특별시장

“율” 입주자 ⑩

637

(제7호서식)	
남 부 원 부	
성명	
주소	
예치내역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회관부설근로자 임대아 파트 임대보증금예치
예치금액	원
예치일자	198 . . .
수입일부인	
은행	

남입고지서 및 남입 필봉지 서	
성명	
주소	
예치내역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회관부설근로자 임대아 파트 임대보증금예치
예치금액	원
예치일자	198 . . .
수입일부인	
은행	

남부영수증 (불안보관용)	
성명	
주소	
예치내역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회관부설근로자 임대아 파트 임대보증금예치
예치금액	원
예치일자	198 . . .
수입일부인	
은행	

제 911호

서

로

1982.3.04 38-12

38-20 제911호 시

보 1982.5.25.

(제8호서식)

입 주 자 보 증 작 서

입주자 인적사항

본 적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직 명	

위 사람이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부설 임대아파트에 입주함에 있어 귀회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교외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회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법상책임을 지겠더
음기 이에 신원을 보증하고 이 작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사업장명

직인

·대표자성명

()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장 귀하

၁၃၁

(제 9 호 서식)

• 임대 아파트 입주자 관리 카드

사진

1. 입주자 일적사항

성명	(한문)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민등록지	
학력 (초중학교)		종교		취미
				특기
근무처	회사명 :	근무부서 :	월봉급액 :	원
퇴거지				

38-22 제911호

서

부 1982.5.25

3. 아파트 이용

동 수	입 주		퇴 거		비 고
	년 월 일	사 유	년 월 일	사 유	
동 호					

4. 사용료 납부

○ 보증금

보증금액	예 치			환 볼		비 고
	년 월 일	기간	은행	년 월 일	환불수령자	

○ 월임대료 (원)

년 월 분	월분									
납세 확인										

년 월 분	월분									
납세 확인										

작성자 : 적

설명

(ii)

제911호 시

보 1982. 5.25 38-23

(제 10호 서식)

임대 계약 해지 통고서

임대아파트

동 호

귀하

귀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서울특별시 근로청
소년회관운영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해지를 통고하오니
198 년 월 일까지 되거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고 전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
2. 임주층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매여하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으며
관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동숙시켰음.
3. 시설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
4.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고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손해를 기하였음.
5. 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임주 대상에서 제외된자
6. 타기업체에 전작(단, 전작 기업체에서 재수천을 받은자는 제외)
7. 임대료등 2개월 이상 지남
8. 회관장의 지시 명령위반 및 불응
9. 기타 임대아파트 임주에 부적합

198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⑩

38-24 제911호 시

1982. 5. 25

(제 11호 서식)

남 부 원 부

년도	월분
성명	
주소	
내 역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부설근로자임대아파트 임대료
남부금	임대료 연체료 합계
납부일자	19 년 월 일까지
납부은행	

수입일부인

은행

남입고지서 및 남입필통지서

년도	월분
성명	
주소	
내 역	
남부금	임대료 연체료 합계
납부일자	19 년 월 일까지
납부은행	

위 금액을 기한내에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일부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장

영 수 증

년도	월분
성명	
주소	
내 역	
남부금	임대료 연체료 합계
납부일자	19 년 월 일까지
납부은행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은행

수입일부인

취급자

제911호 시

보 1982. 5.25 38-25

(제12호 서식)

임대아파트제약해지신청서

입주자 인적 사항	입주장소 성명 근무처	아파트 동 호 주민등록번호 입주년월일	년 월 일
퇴거지		퇴거예정일	
해지사유			

위와같이 임대아파트 제약해지를 신청합니다.

198 년 월 일

입주자

④

서울특별시장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8-26 제911호 시

보 1982. 5.25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4 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고시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부 고시 제521호(81.12.31)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단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5.28.

서 울 특 별 시 장

○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여객자동차정류장	강서구 방화동 487 일대	2,569 m ²	시내버스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5 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공원) 중 건설부고시 제464호(81.12.13) 동고시 제172호, 제174호(82.4.18)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176호(82.4.29)로 변경 결정되고 재 결정한 천마공원의 5개 공원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 규정 및 건설부고시 제521호(81.12.31)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 도시정비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2. 5.29.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적 승인조서

공원종류	공원명	위 치	면 적 (m ²)			비 고
			기 점	변 경	변경후	
근린공원	천마공원	강동구 마천동	195,590	감 14,870	180,710	변경결정
"	농동 "	성동구 농동	492,102	증 68,450	560,552	"
"	5.16 "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9 일대	26,102	감 1,693.4	24,408.6	"

제 911 호 시 보 1982. 5. 25 38-27

공원종류	공원명	위치	면적 (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근린공원	우장공원	강서구 내발산, 동촌, 화곡동	232,326	-	232,326	제결정
"	대방공원	동포구 대방동	53,080	-	53,080	"
"	양재공원	강남구 양재, 서초동	350,200	-	350,200	"

나. 지적승인도면 : 별첨과 같음 (생략)

* 변경공원중 변경된 구간의의 재획경제는 종전과 같으므로 생략함.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6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65호(81.6.15) 및 동고시제 416호(81.11.14)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된 흥익대학교 및 경희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전설부 고시 제 521호(81.12.31)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책과에 배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5. 31.

서울특별시장

가. 흥익대학교

1) 준공예정일

당초 : 82.2.28

변경 : 83.8.31

2) 기타사항 : 변경없음

나. 경희대학교

1) 준공예정일

당초 : 82.2.28

변경 : 82.6.30

2) 기타사항 :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전설부고시 제 294호(78.10.2)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336호(80.9.30)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70호(82.4.21)로 공란 풍교한바 있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건설관리과에 배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5. 31.

서울특별시장

38-28 제 911호 시

보 1982.5.25

1. 사업시행의 위치 : 성북구 동소문동 1가, 성북동 1가, 삼선동 1가, 동소문동 2가 일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미아로 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B= 5 - 10 M,
L = 780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성북구청장)
5. 사업의 차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83.11.31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면적조사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22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특정 열 사용기자재 시공업체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

1982. 5. 26.

서울특별시장

지정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사유	조치내용
성북제 15호	금호설비	성북구길음동 20-9	박종호	무단폐지	지정취소

○ 서울특별시공고제 221호

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조 규정에 의거 K·S 표시정지처분한사항을 아래와 같이 해제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조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한다.

1982. 5. 25.

서울특별시장

허가번호 : 제 2388호

허가일자 : 1981.5.22

제조업체명 : 봉실화재주식회사

대표자 : 서정인

소재지 : 서울구로구신도림동 390-7

규격번호 : KSC 4202

품명 : 저압 3상 유도전동기

종류, 등급 : 저압특수농형 1종 밀폐형 220/380V 4극교증

60 Hz 5.5 - 37 kw

처분일자 : 1982.2.10

해제일자 : 1982.5.25

제 911 호 시

보 1982.5.25 38-29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22 호

구산동가압장시설공사 실시계획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8 호 (82. 4. 26)로 지적승인고시된 은평구 갈현동 "구산동가압장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상하수부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5. 26.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위치 : 은평구 갈현동
333-9번지 2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수도시설)

구산동가압장시설공사

다. 사업규모 및 면적 : 316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종합건설본부장)

마. 사업의 차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예정일 : 사업실시계획인가증시

2) 준공예정일 : 82.11.3

바. 사용 또는 수용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 외의 권리경색
(생략)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조 3항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 성명 (생략)

아. 공람기간 : 공구일로부터 14일간

자.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
항은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상
하수부에 제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산동가압장부지토지조사

순위	소재지	분활전토지			분활후(수용대상)토지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은평구갈현동	333-9	대지	219	333-9	대지	219	은평구갈현동 333번지	박계원	
	"	317-5	도로	61	317-5	도로	61		서울특별시장	
	"	317-6	구거	36	"	구거	36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24 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0 호 ('81.

9.22)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 (시장)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조 1항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에

38-30 제 911 호 시

보 1982.5.25

의거 다음과 같이 완료 공고한다.
2. 본사업에 대한 관제도서는 강동
구청 도시정비파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5. 27.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강동구성내동 428-2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시장)
명칭 : 둔촌시장 (소매시장)
다. 사업의 규모
1) 지적 : 3,316.3㎡
2) 건축면적 : 1,782,496 평
라. 사업시행자 주소 : 강동구성내동
428-2
성명 : 둔촌시장(주) 대표
한용석, 김성자
마. 사업시행기간 : '80.11.27 -
'82.9.30.
바. 준공도면 :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 226 호

도시계획사업 (백화점) 변경시행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30호 (80.1.30)로 도시계획사업 (백화점) 시행허가한바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변경 시행코자 다음과 같이 공포 공고한다.

관제도서는 강남구청도시정비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5. 28.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내용

가. 위치 :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산 67-61
나. 사업명 : 도시계획사업 (백화점)
다. 사업규모 : 대지 : 3,097

연건평 : 14,594.7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산 67-2
진영건설(주) 대표 김익진

2. 변경내용

가. 당초 : 1980년 2월 1일 - 1982년 5월 30일
나. 변경 : 1980년 2월 1일 - 1983년 5월 30일

◎ 서울특별시공고 제 227 호

건설업 (단종) 면허영업정지공고

다음업체는 건설업법 제 37조 제 2항 9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 (단종) 면허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기 공고한다.

다 음

상 호	대 표자	영업소재지	단종번호	위반사항	근 거 법 규	영업정지기간
영보공영 (주)	우교성	마포구 합정동	서울 13- 414-21	건설기술자 면허증대여	건설업법 제 37 조제 2 항제 9 호	82. 5. 28 ~ 82. 11. 27

1982. 5. 28.
서 울 특 별 시 장

시 령

◎ 1982년 5월 28일자

령체 216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천호	82.5.10사 인사발령 제20:	종로구	지방수의원보시보
최계년	호에 의한 임용을 미착으로 등	중구보건소	지방약무사보시보
김성열	일자로 취소함.	정신병원	"
오정균	"	의약과	"
김선옥	"	영등포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보시보 (병리)
천양미	"	강남병원	지방간호기원보시보
강인재	"	동부병원	"
신은희	"	"	지방간호기원보
유경희	"	"	"
강명록	"	"	지방간호기원보시보
김경자	"	"	"
남길순	"	"	"
이은웅	"	영등포병원	지방간호기원보
박천숙	"	"	지방간호기원보시보
구복서	"	"	"
김재숙	"	"	"
최선영	"	정신병원	지방간호기원보
김태선	"	"	"
서경해	"	"	지방간호기원보시보
백온기	"	아동병원	"
김신애	"	"	"
김명애	"	"	"
정미연	"	"	"
김정아	"	"	지방간호기원보

38-32 제911호 시

1982.5.25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강영재	82.5.10자 인사발령 제204호에 의한 임용을 미착임으로	아동병원	지방간호기원보
환경복	동일자로 취소함.	/	지방간호기원보시보
윤미희		/	지방간호기원보
이봉자	/	/	
정해	/	/	지방간호기원보시보
이정숙	/	서대문병원	/
조인순	/	/	
이은진	/	/	지방간호기원보
허정희	/	/	지방간호기원보시보
정금녀	/	/	
허결애	/	/	
이육경	/	/	
이병숙	/	/	지방간호기원보
최선자	/	/	
서재경	/	/	지방간호기원보시보
김명숙	/	/	
김순득	/	/	
최민자	/	/	

① 1982년 5월 20일자	령제 238호	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82.5.21~82.8.20까지 내무국 대기근무를 명함)
보건사회국 지방행정주사	박정의	
보건위생과	근무를 명함.	② 1982년 5월 26일자
② 1982년 5월 21일자	령제 245호	경상북도서무파 지방행정사무관 이원달
지하철운영사업소 지방서기관	이영재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내무국총무과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1항제1호		

제 911 호 시

보 1982.5.25 38-33

<p>경상북도회계과 지방기재원(8등급) 심영직</p> <p>서울특별시전일을 명함. 내무국총무과 근무를 명함.</p> <p>◎ 1982년 5월 25일자 형제 247호</p> <p>수원기전과 지방토목기사보 조정호</p> <p>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81.12.31자 전체(발령 제 540호)처분을 취소하고 경고함.</p> <p>종로구 지방토목기원 신감칠</p> <p>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81.12.31자 전체(발령 제 540호)처분을 취소하고 경고함.</p> <p>건축지도과 지방건축기사 이석도</p> <p>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p>	<p>자라 81.12.8자 전체(발령 제 511호)처분을 취소하고 경고함.</p> <p>◎ 1982년 6월 1일자 형제 248호</p> <p>종합건설본부 지방전기기과 김복동</p> <p>지하철운영사업소 파견 (82.6.1-82.11.30)</p> <p>◎ 1982년 5월 26일자 형제 249호</p> <p>재개발과 지방건축기사 조성재</p> <p>올림픽조직위원회 파견 (82.5.26-83.5.25)</p> <p>서울특별시장</p> <p>◎ 1982년 5월 21일자 형제 250호</p> <p>서울시비서관 별정직 4급상당 박석현</p> <p>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p>대통령</p>
<p>◎ 1982년 5월 27일자</p>	<p>형제 251호</p>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운호	종합민원실 계설준비요원에 임함.	지하철건설본부전기과	기방해정주사

38-34 제911호 시

보 1982.5.25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최종협	종합민원실 개설준비요원에 임함.	중구 기획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이근도	"	재무국 세무지도과	"
김효관	"	구로구 청소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상호	"	내무국 총무과	"
정성용	"	교통국 관광과	"
황인무	"	강동구 건축과	지방건축기사
령제 252호		81.12.31자 감봉 1월 처분을 견책 으로 변경 처분함.	
강동구건설국장 지방토목기정	홍종민	강동구세무 1과 지방행정주사	신동준
강동구 도시정비국장	겸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소청위 82-34:82.5.4)에 의거 82.2.4자 견책처분을 취소하고 경 고 처분한다.	
령제 253호		령제 254호	
산업경제국연료과 지방행정주사	정인국	중구토목과장 지방토목기과	박길동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소청위 82-34:82.5.24)에 의거 81.12.31자 감봉 1월 처분을 견책 으로 변경 처분함.	주택개량과 개량 2과장 직대 강서구토목과장 지방토목기과		조명환
지하철운영사업소 지방행정주사	서재학	성북구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소청위 82-34:82.5.24)에 의거			

제 911 호 시

보 1982.5.25 38-35

령 제 255 호	내 무 국 지방토목기원
내 무 국 지방토목기원 오 중석	복직을 명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82.2.23자 직위해제처분(발령 제 72호)을 취소함. 강서구 근무를 명함.	◎ 1982년 5월 25일자 령 제 256 호 성북구보건소 박 철호 지방보건기획사
내 무 국 지방토목기원 조 병현	성북구보건소 방역과장, 지방보건기획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82.2.23자 직위해제처분(발령 제 72호)을 취소함. 중구 근무를 명함.	◎ 1982년 5월 27일자 령 제 257 호 영등포구 김 용남 지방차공기원
내 무 국 지방토목기사 백 흥기	복직을 명함.
복직을 명함. 은평구 근무를 명함.	4호봉을 급함.
내 무 국 지방토목기사 김 철교	선유수원지사무소 근무를 명함.
복직을 명함. 구로구 근무를 명함.	

령 제 258 호

성 명	발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문상	동대문구	용산구	지방 행정사무관
최성기	용산구	동대문구 김설관리과장	"

38-36 제 911 호 시

보 1982.5.25

◎ 1982년 6월 7일자		령제 259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종기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감사원	감사주사
서수석	"	"	감사주사보
강석원 주정호	"	"	"

◎ 1982년 5월 28일자		령제 260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만수	82.5.10자 인사발령 제 203호에 의한 임용미착 으로 동일자 취소함	강서구	지방전기장시보(7등급)
백광현	"	강남구	"
이연호	"	종합종말처리 사업소	"
차종원	"	"	지방전기원시보(8등급)
이영찬	"	"	"
이병완	"	"	지방전기장시보(7등급)
박정순	"	서부위생처리장	"
송영태	"	"	"
실흐성	"	도시가스사업소	"

◎ 1982년 6월 1일자		령제 262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천종수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민방위국운영과	지방별정직 7급상당

제911호 사

보 1982.5.25 38-37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조현호	원에 위하여 그직을 면함.	영동포구	지방별정직 7급 상당
김진권	"	민방위국운영과	" "
김양환	"	경찰국면허과	" "
강환설	"	"	" 8급 상당
구본상	"	도시계획국지적과	" "
김강원	"	종합기술시험연구소	" "

령제 263호

성명	발령부서	호봉	직급
천종수	민방위국운영과	15호봉	지방별정직 6급 상당 (화생방지도원)
조현호	관악구	16호봉	" " "
김진권	영동포구	6호봉	" 7급 상당 "
김강원	종합기술시험연구소	4호봉	" " (공해측정기사)
강환설	경찰국면허과	4호봉	" " (전산처리사)
남궁민철	"	3호봉	" 8급 상당 "

◎ 1982년 5월 28일자

령제 264호

건축지도과 성 이현
지방건축기과종합민원실 개설준비요원 접무를 담
합.도봉구 이기준
지방토목기사보종합민원실 개설준비요원 접무를 담
합.

◎ 1982년 5월 29일자

령제 265호

자동차관리사업소 전봉현
지방행정주사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에 처함.자동차관리사업소 김타룡
지방행정주사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에 처함.

38-38 제911호 시

보 1982.5.25.

자동차관리사업소 박희수
지방행정주사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강남구 이한영
지방행정주사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자동차관리사업소 이기운
지방행정주사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자동차관리사업소 김문식
지방행정서기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서울특별시장